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청에 관한 행정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 : 이 조례에서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집행기관 : 구청장 및 구산하 청,소의장
3. 공개 : 행정 정보를 일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고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주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할 뿐만아니라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청구권자) 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대항하는 자로 한다.

1. 남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남구 관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3.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

제5조(공개대상 정보)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2.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 가.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 등 공개됨으로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개인, 단체, 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가.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 결정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나.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 등 공개 하는 것이 구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정보로서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구정 업무 추진상 공개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② 집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할 때에는 공개가능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도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신속히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이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 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2. 공개 청구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사용 목적
3.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청구인의 책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는 그 얻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개여부 결정) ① 집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연장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할 때에는 비공개사유,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개방법) ① 집행기관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보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부산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공부의 등, 조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액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부공개 거부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심의 위원회) ①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의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직할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조직)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구의회의원 3인 및 학계 등 전문성을 가진 3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소집시는 관계부서 책임 공무원을 출석케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2/3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외 누설금지) 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안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정보공개 목록의 작성) ①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익을 위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 열람에 제공한다.

② 목록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운용상황의 공표등) ① 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 상황 공표 등 전담부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법령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과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범위) 이 조례의 시행 직전에 작성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당해 공문서의 목록의 정비가 완료한 것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